

산림조합 정관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일부 변경 공고

2022년 05월 17일 제 156회 임시총회(대의원회)에서 산림조합 정관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공고합니다.

2022. 05. 17.

양평군산림조합



산림조합정관(예) 일부개정정관(안)

1. 개정이유

대의원도 임원과 같이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사업이용실적이 필요하도록 하고, 임원(조합장 제외) 및 대의원의 결격사유 중 납입출자액을 조합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의원도 임원과 같이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사업이용실적이 필요하도록 함(안 제53조제5항)

나. 임원(조합장 제외) 및 대의원의 결격사유 중 50계좌 이상의 납입출자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조합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1항 제11호)

- 납입출자 계좌 : 199계좌 이상(995천원 이상)

다. 사업이용실적 변경 시 경과규정을 명확하게 함(안 제64조제1항제13호)

- 경제사업 : 30만원 이상

- 수 신 : 15백만원 이상

- 여 신 : 9백만원 이상

산림조합정관(예) 일부개정정관(안)

산림조합정관(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중 “30일”을 “180일”로 한다.

제53조제5항 중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을 “제64조제1항을”로 한다.

제59조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및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제2항 중 “제7항”을 각각 “제8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1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조합에 대하여 199계좌(조합장의 경우에는 200계좌) 이상의 납입출자(이하 “기준출자”라 한다)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 또는 합병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고1) 제11호의 50계좌는 50계좌 이상 200계좌 미만의 범위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비고2) 제11호의 출자계좌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칙에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제64조제1항제13호 각 목 아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30)만원 이상

나. 제5조제1항제4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적금의 평균잔액 : (15백)만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4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9백)만원 이상

(비고1) 제13호의 각 목 중 조합의 실정에 따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나만을 선택할 때에는 제13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음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비고2) 제13호 각 목의 ()의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71조제3항에 따라 결산 보고서의 승인을 받은 최근 1회계연도의 전체 조합원의 경제사업 평균이용 금액(예금·적금 및 대출금의 경우에는 평균잔액)의 100분의 40 이상에서 평균이용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조합 실정에 따라 정한다.

(비고3) 제13호의 사업이용실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칙에 다음과 같은 경과 조치를 두어야 한다.

부칙 <2022.03.10. 산림청장 인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이용실적 및 기준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대의원의 선거일이 공고되는 경우의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은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제13호가목의 기준금액은 1회계연도 대비 부족한 사업이용실적 기간의 비율만큼 감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대의원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의결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기준출자 보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제64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정관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선거일이 공고된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제6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출자계좌 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이용실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제64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조합정관(예)부속서임원선거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 개정이유

조합 임원선거에 등록하거나 추천된 사람은 해당 선거의 선거기간이 종료되기 전 해당 조합의 다른 선거(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선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의원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대의원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등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합 임원선거에 등록하거나 추천된 사람은 해당 선거의 선거기간이 종료 되기 전 해당 조합의 다른 선거(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나. 대의원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대의원직을 사직하도록 함
(안 제8조제1항)
- 다. 후보자의 순서를 추첨을 통해 정하도록 함(안 제60조제5항 및 제90조 제2항)

조합정관(예)부속서임원선거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조합정관(예)부속서임원선거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이중등록의 제한) 이 규약에 따라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및 추천된 사람은 해당 선거의 선거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조합의 다른 선거 (이 규약에 따른 임원선거 및 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에 따른 대의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8조제1항 중 “비상임감사”를 “비상임감사, 대의원”으로 한다.

제60조제5항 중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한다”를 “추첨으로 결정한다”로 한다.

제90조제2항 중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한다”를 “추첨으로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따라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로 기표한다.
- ⑥ 선출인이 1명인 경우 단기명으로, 2명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단기명 또는 연기명을 정하여 선출한다.

제9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 ①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9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보궐선거”를 각각 “보궐선거 및 재선거”로 한다.

제96조 전단 중 “제45조”를 “제43조제2항, 제45조”로 한다.

부칙 <2022.03.10. 산림청장 인가>

이 규약은 202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